

법원공보

2024. 08. 15
THURSDAY
VOL.1694



법원행정처

목차

contents

<u>내규</u>	직원상담에 관한 내규 폐지내규 —————	1347
-----------	------------------------	------

<u>예규</u>	사법부 유연근무제 실시 및 운영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	1348
	소멸시효 완성 전 공탁금 출급 및 회수청구 안내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	1350

<u>신법령 목록</u>	—————	1361
---------------	-------	------

<u>인사</u>	—————	1371
-----------	-------	------

내규

● 직원상담에 관한 내규 폐지내규

(대법원내규 제570호 2024. 7. 30. 결재)

직원상담에 관한 내규를 폐지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2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예규

● 사법부 유연근무제 실시 및 운영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대법원행정예규 제1402호 2024. 7. 29.결재)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신청자격 및 이용범위) ① 특정직공무원은 주 1일의 범위 내에서 스마트워크형 온라인 원격근무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 2일의 범위 내에서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허법원 소속 특정직공무원 및 기술심리관·조사관(임기제 포함)은 특허법원 내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24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7조(신청자격 및 이용범위) 특정직공무원은 주 1일의 범위 내에서 스마트워크형 온라인 원격근무를 신청할 수 있다. 단, 특허법원소속 특정직공무원 및 기술심리관·조사관(임기제 포함)은 특허법원 내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7조(신청자격 및 이용범위) ① 특정직공무원은 주 1일의 범위 내에서 스마트워크형 온라인 원격근무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 2일의 범위 내에서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허법원 소속 특정직공무원 및 기술심리관·조사관(임기제 포함)은 특허법원 내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소멸시효 완성 전 공탁금 출급 및 회수청구 안내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대법원행정예규 제1403호 2024. 8. 6. 결재)

소멸시효 완성 전 공탁금 출급 및 회수청구 안내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1부터 별지 5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별지 1]

공탁금 출급청구에 관한 안내

- 법원행정처에서는 [공탁법] 제9조제4항(소멸시효 완성 전 공탁금의 수령·회수 안내)에 따라 공탁금이 장기간 지급되지 않고 있는 공탁사건에 대하여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 공탁금 출급청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 담당부서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관할공탁소			
공탁사건번호	년 금 제 호	공 탁 종 류	변제공탁
금 액 (잔액)※	원	공 탁 일 자	년 월 일
공 탁 자			
피 공 탁 자			
관 련 사 건			
지급제한사건			

※ 공탁당사자가 다수인 경우 본 안내문에 표시된 “금액(잔액)”은 일부 권리자가 출급·회수 후 남은 금액(귀하 또는 다른 권리자들에게 지급할 금액)일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귀하를 피공탁자로 한 위 변제공탁사건이 현재 지급되지 않은 상태로 있습니다.
2. 반대급부 이행조건 또는 지급제한사유*가 있거나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인 경우 등 공탁금 출급청구권 행사에 장애사유가 있다면 그 사유를 해소한 후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 「민사집행법」상 (가)압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등을 말하며, 지급제한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사건의 (가)압류 발령법원 또는 소관부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공탁금 출급청구 시 첨부해야 할 서류는 함께 보내드린 “변제공탁 출급청구절차 안내문”을 참고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서류는 개별 사건마다 다를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공탁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를 유보하고 공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후에 민사소송 등 다른 방법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5.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출급청구를 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완성으로 국고에 귀속될 수 있습니다([공탁법] 제9조제3항).
6. 본 안내문 발송을 위하여 [공탁법] 제9조제4항, [공탁규칙] 제60조의2제5항에 의하여 귀하의 현 주소를 조회하여 발송합니다.

※ 공탁원인사실 등 공탁사건의 자세한 내용에 관하여 의문이 있으시면 관할공탁소에 방문하여 기록을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사법등기심의관



변제공탁 출급청구절차 안내문

※자세한 출급절차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은 QR코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동 준비서류	개인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표 초본 (주소가 변동된 경우) 1천만 원 초과 시: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그 외의 용도란’은 00지 방법원 0000년 금 제000호 공탁금 출급 청구로 기재되어야 함
		대리인	본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5천만 원 초과 시: 공탁통지서 원본 추가
	법인	대표자	신분증,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천만 원 초과 시: 법인인감증명서, 인감도장(사용인감 불가)
		대리인	법인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대리인의 신분 증 5천만 원 초과 시: 공탁통지서 원본 추가
	법인 아닌 사단· 재단	대표자 (관리인)	신분증 1천만 원 초과 시: 대표자(관리인)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대리인	대표자(관리인)의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정관 기타 규약,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자필서명 후 신분증 사본이 첨부된 성인 2명 이상의 사실확인서 첨부) 5천만 원 초과 시: 공탁통지서 원본 추가
	반대급부가 있는 경우: 반대급부 증명서면 채권자 불확지 공탁 시: 출급청구권 증명서면		
개별 구비서류	미성년 자	①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②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단, 부모 중 1인이 청구 시 배우자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또는 친권불행사 증명서	
	상속인	피상속인(망인)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입양관계증 명서(상세),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상세), 제적등본, 말소자초본 등 상속증명서면 ※ 협의분할시 협의분할서(상속인 전원의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 추가	
	재외국 민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표 초본(재외국민등록부등본, 거주국주소공증서면)
		대리인	위임장, 인감증명서, 동일인 소명을 위한 주민등록표초본(재외국민등록부등본, 거 주국 주소공증서면)
	외국인	본인	아래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와 동일(위임장은 제외)
		대리인	위임장, 인감증명(인감증명제도가 없는 나라는 위임장 서명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 하는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공증), 동일인임을 확인하는 서면(본국 관공서의 증명 또는 본국 공증인의 공증)과 주소증명서면(본국 관공서의 증명 또는 본국 공증인의 공증)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 제출시: 번역문과 외국 공문서, 외국 공증인이 공증한 문서는 아포스티유 확인 제출(협약 미가입국은 재외공관 영사관 확인)		
관할 공탁소와 거리가 먼 경우	공탁금이 1천만 원 이하인 경우, ① 본인이 직접 청구하는 경우와 ② 법인 및 법인의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관할공탁소뿐만 아니라 가까운 지방법원 또는 지원 공탁소(관할공탁소와 같은 특별시 및 광역시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제외)에서도 공탁금을 찾을 수 있습니다.		
	공탁금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전자공탁홈페이지(http://ekt.scourt.go.kr)에서 지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인감 및 인감증명은 불요하며 서명은 공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서명으로 합니다 (공탁금 보관은행인 신한, KEB하나, 우리, 농협(농협중앙회만 가능), 국민, 아이엠뱅크, 부산, 광주, 경남 이외의 은행은 이체 불가).		
※ 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등 관공서 발급서면은 발급일로부터 3 개월 이내의 것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별지 2]

공탁금 출급청구에 관한 안내

- 법원행정처에서는 [공탁법] 제9조제4항(소멸시효 완성 전 공탁금의 수령·회수 안내)에 따라 공탁금이 장기간 지급되지 않고 있는 공탁사건에 대하여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 공탁금 출급청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 담당부서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관할공탁소			
공탁사건번호	년 금 제 호	공 탁 종 류	집행공탁
금 액 (잔액)*	원	공 탁 일 자	년 월 일
공 탁 자			
피 공 탁 자			
관 련 사 건			
지급제한사건			

※ 공탁당사자가 다수인 경우 본 안내문에 표시된 “금액(잔액)”은 일부 권리자가 출급·회수 후 남은 금액(귀하 또는 다른 권리자들에게 지급할 금액)일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귀하를 피공탁자로 한 위 집행공탁사건이 현재 지급되지 않은 상태로 있습니다.
 2. 「민사집행법」상 (가)압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등 지급제한으로 인하여 출급청구권 행사의 장애사유가 있다면 그 사유를 해소한 후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 지급제한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사건의 (가)압류 발령법원 또는 소관부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공탁금 출급청구 시 첨부해야 할 서류는 함께 보내드린 “집행공탁 출급청구절차 안내문”을 참고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배당절차와 관련된 집행공탁의 경우는 관련사건의 부서(경매계 또는 채권배당계)를 경유하여 증명서를 받아 이를 출급청구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 첨부서류는 개별 사건마다 다를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출급청구를 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완성으로 국고에 귀속될 수 있습니다([공탁법] 제9조제3항).
 5. 본 안내문 발송을 위하여 [공탁법] 제9조제4항, [공탁규칙] 제60조의2제5항에 의하여 귀하의 현 주소를 조회하여 발송합니다.
- ※ 공탁원인사실 등 공탁사건의 자세한 내용에 관하여 의문이 있으시면 관할공탁소에 방문하여 기록을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사법등기심의관



집행공탁 출급청구절차 안내문

※ 자세한 출급절차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은 QR코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경매계(지급위탁계) 또는 기타집행계(채권배당계) 등 집행법원에서 “증명서 수령 후”**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관할공탁소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공통 준비서류	개인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표 초본 (주소가 변동된 경우) 1천만 원 초과 시: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대리인	본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증명서(경매계 또는 채권배당계 등에서 수령)		
	법인	대표자	신분증,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천만 원 초과 시: 법인인감증명서, 인감도장(사용인감 불가)	
		대리인	법인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증명서(경매계 또는 채권배당계 등에서 수령)		
	법인 아닌 사단· 재단	대표자 (관리인)	신분증 1천만 원 초과 시: 대표자(관리인)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대리인	대표자(관리인)의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증명서(경매계 또는 채권배당계 등에서 수령) 정관 기타 규약,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자필서명 후 신분증 사본이 첨부된 성인 2명 이상의 사실확인서 첨부)		
	※ 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 초본, 위임장은 경매계와 공탁소에 각각 제출 하셔야 하므로 2부씩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원인으로 하는 공탁의 경우, 위 증명서를 제외한 첨부서면과 ①공 탁통지서(5천만 원 초과 시) ②가압류취소결정정본과 송달증명, 가압류취하증명, 가압류해제증명을 제출하여 출급청구 가능. 단, 가압류된 금액을 초과하여 채권 전액이 공탁된 경우, 가압류의 효력 이 미치지 않는 부분은 위 증명서를 제외한 공통서류 및 공탁통지서(5천만 원 초과 시) 제출하여 출급청구 가능			
증명서 수령을 위한 첨부서면	※ 정확한 내용은 경매계, 채권배당계 등 소관부서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임차인	명도확인서 1부(매수인의 인감도장 날인), 매수인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 1부, 임대차계약서 원본,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사항 포함)		
	압류권자	추심권자	압류 및 추심명령 정본, 송달증명	
		전부권자	압류 및 전부명령 정본, 확정증명	
	가압류권자	가압류결정문 및 가압류신청서 사본 본안소송에서 승소한 집행력 있는 중국판결 등 - 본안 판결정본 1부, 집행문, 송달 및 확정증명 1부(판결문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이 나타나지 않은 경우 소장사본 추가 제출)		
	전세권자	명도확인서 1부(매수인의 인감도장 날인), 매수인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 1부, 전세계약서 원본, 전세권설정 등기필정보		
	근저당권자	근저당 등기필정보, 근저당설정 원인증서(차용증 등) 원본, 근저당설정계약서 원본		
	배당이의	배당이의 판결정본 및 송달 및 확정증명 단, 소취하된 경우(소취하증명, 소취하간주증명)		
관할 공탁소와 거리가 먼 경우	공탁금이 1천만 원 이하인 경우, ① 본인이 직접 청구하는 경우와 ② 법인 및 법인의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관할공탁소뿐만 아니라 가까운 지방법원 또는 지원 공탁소(관할공탁소와 같은 특별시 및 광역시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제외)에서도 공탁금을 찾을 수 있습니다.			
※ 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등 관공서 발급서면은 발급일로부터 3 개월 이내의 것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별지 3]

공탁금 회수청구에 관한 안내

- 법원행정처에서는 [공탁법] 제9조제4항(소멸시효 완성 전 공탁금의 수령·회수 안내)에 따라 공탁금이 장기간 지급되지 않고 있는 공탁사건에 대하여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 공탁금 회수청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 담당부서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관할공탁소			
공탁사건번호	년 금 제 호	공 탁 종 류	재판상 보증공탁
금 액 (잔액)*	원	공 탁 일 자	년 월 일
공 탁 자			
피 공 탁 자			
관 련 사 건			
지급제한사건			

※ 공탁당사자가 다수인 경우 본 안내문에 표시된 “금액(잔액)”은 일부 권리자가 출급·회수 후 남은 금액(귀하 또는 다른 권리자들에게 지급할 금액)일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귀하를 공탁자로 한 위 재판상 담보공탁사건이 현재 지급되지 않은 상태로 있습니다.
2. 「민사집행법」상 (가)압류, 제납처분에 의한 압류 등 지급제한으로 인하여 회수청구권 행사의 장애사유가 있다면 그 사유를 해소한 후 공탁금 회수청구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 지급제한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사건의 (가)압류 발령법원 또는 소관부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공탁금 회수청구 시 첨부해야 할 서류는 함께 보내드린 “재판상 담보공탁 회수청구절차 안내문”을 참고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담보취소는 담보제공을 명한 법원에**, ① 담보제공자(공탁자)가 승소한 본안판결이 확정된 경우 등 **담보제공사유가 소멸한 경우**, ② 담보취소에 관한 **담보권리자(피공탁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③ 소송완결 후 **담보권리자가 권리행사 최고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첨부서류는 개별 사건마다 다를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공탁금회수청구권은 회수청구를 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완성으로 국고에 귀속될 수 있습니다([공탁법] 제9조제3항).
5. 본 안내문 발송을 위하여 [공탁법] 제9조제4항, [공탁규칙] 제60조의2제5항에 의하여 귀하의 현 주소지를 조회하여 발송합니다.

※ 공탁원인사실 등 공탁사건의 자세한 내용에 관하여 의문이 있으시면 관할공탁소에 방문하여 기록을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사법등기심의관



재판상 담보공탁 회수청구절차 안내문

※ 자세한 출금절차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은 QR코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담보제공을 명한 법원(종합민원실이나 민사신청과)에 방문**하여 담보취소 결정을 받고 **“담보취소 결정정보와 확정증명”**을 수령 후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관할 공탁소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공통 준비서류	개인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표 초본(주소가 변동된 경우) 1천만 원 초과 시: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그 외의 용도란’ 은 00지 방법원 0000년 급 제000호 공탁금 출급 청구로 기재되어야 함
		대리인	본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담보취소결정정보 및 확정증명 5천만 원 초과 시: 공탁서 원본 추가	
	법인	대표자	신분증,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천만 원 초과 시: 법인인감증명서, 인감도장(사용인감 불가)
		대리인	법인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담보취소결정정보 및 확정증명 5천만 원 초과 시: 공탁서 원본 추가	
	법인 아닌 사단· 재단	대표자 (관리인)	신분증 1천만 원 초과 시: 대표자(관리인)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대리인	대표자(관리인)의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담보취소결정정보 및 확정증명 5천만 원 초과 시: 공탁서 원본 추가 정관 기타 규약,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자필서명 후 신분증 사본이 첨부된 성인 2명 이상의 사실확인서 첨부)	
	개별 구비서류	미성년 자	①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②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단, 부모 중 1인이 청구 시 배우자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또는 친권불행사 증명서
상속인		피상속인(망자)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입양관계증 명서(상세),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상세), 제적등본, 말소자초본 등 상속증명서면 협의분할시 협의분할서(상속인 전원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첨부) 추가	
재외국 민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표 초본(재외국민등록부등본, 거주국주소공증서면)
		대리인	위임장, 인감증명서, 동일인 소명을 위한 주민등록표초본(재외국민등록부등본, 거 주국 주소공증서면)
외국인		본인	아래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와 동일(위임장은 제외)
		대리인	위임장, 인감증명(인감증명제도가 없는 나라는 위임장 서명이 본인의 것임을 증 명하는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공증), 동일인임을 확인하는 서면(본국 관공서의 증명 또는 본국 공증인의 공증)과 주소증명서면(본국 관공서의 증명 또는 본국 공증인의 공증)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 제출시: 번역문과 외국 공문서, 외국 공증인이 공증한 문서는 아포스티유 확인 제출(협약 미가입국은 재외공관 영사관 확인)			
관할 공탁소와 거리가 먼 경우	공탁금이 1천만 원 이하인 경우, ① 본인이 직접 청구하는 경우와 ② 법인 및 법인의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관할공탁소뿐만 아니라 가까운 지방법원 또는 지원 공탁소(관할공탁소와 같은 특별시 및 광역시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제외)에서도 공탁금을 찾을 수 있습니다.		
	공탁금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전자공탁홈페이지(http://ekt.scourt.go.kr)에서 지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인감 및 인감증명은 불요하며 서명은 공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서명으로 합니다 (공탁금 보관은행인 신한, KEB하나, 우리, 농협(농협중앙회만 가능), 국민, 전북, 아이엠뱅크, 부산, 광주, 경남 이외의 은행은 이체 불가).		
※ 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등 관공서 발급서면은 발급일로부터 3 개월 이내의 것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별지 4]

공탁금 출급청구에 관한 안내

- 법원행정처에서는 [공탁법] 제9조제4항(소멸시효 완성 전 공탁금의 수령·회수 안내)에 따라 공탁금이 장기간 지급되지 않고 있는 공탁사건에 대하여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 공탁금 출급청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 담당부서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관할공탁소			
공탁사건번호	년 금 제 호	공 탁 종 류	개인회생공탁
금 액 (잔액)*	원	공 탁 일 자	년 월 일
공 탁 자			
피 공 탁 자			
관 련 사 건			
지급제한사건			

※ 공탁당사자가 다수인 경우 본 안내문에 표시된 “금액(잔액)”은 일부 권리자가 출급·회수 후 남은 금액(귀하 또는 다른 권리자들에게 지급할 금액)일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귀하를 피공탁자로 한 위 개인회생공탁사건이 현재 지급되지 않은 상태로 있습니다.
2. 「민사집행법」상 (가)압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등 지급제한으로 인하여 출급청구권 행사의 장애사유가 있다면 그 사유를 해소한 후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 지급제한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사건의 (가)압류 발령법원 또는 소관부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공탁금 출급청구 시 첨부해야 할 서류는 함께 보내드린 “개인회생공탁 출급청구절차 안내문”을 참고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서류는 개별 사건마다 다를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출급청구를 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완성으로 국고에 귀속될 수 있습니다([공탁법] 제9조제3항).
5. 본 안내문 발송을 위하여 [공탁법] 제9조제4항, [공탁규칙] 제60조의2제5항에 의하여 귀하의 현 주소를 조회하여 발송합니다.

※ 공탁원인사실 등 공탁사건의 자세한 내용에 관하여 의문이 있으시면 관할공탁소에 방문하여 기록을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사법등기심의관



개인회생공탁 출급청구절차 안내문

※ 자세한 출급절차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은 QR코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관할법원(개인회생과 또는 민사신청과) 회생위원에게 “증명서” 수령 후**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관할공탁소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공통 준비 서류	개인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표 초본 (주소가 변동된 경우) 1천만 원 초과 시: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그 외의 용도란’은 00지 방법원 0000년 금 제000호 공탁금 출급 청구로 기재되어야 함	
		대리인	본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증명서(개인회생과 또는 민사신청과에서 수령)		
	법인	대표자	신분증,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천만 원 초과 시: 법인인감증명서, 인감도장(사용인감 불가)	
		대리인	법인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증명서(개인회생과 또는 민사신청과에서 수령)		
	법인 아닌 사단· 재단	대표자 (관리인)	신분증 1천만 원 초과 시: 대표자(관리인)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대리인	대표자(관리인)의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증명서(개인회생과 또는 민사신청과에서 수령) 정관 기타 규약,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자필서명 후 신분증 사본이 첨부된 성인 2명 이상의 사실확인서 첨부)		
		※ 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 초본, 위임장은 회생부서와 공탁소에 각각 제출 하셔야 하므로 2부씩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개 별 구 비 서류	미성년 자	①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②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단, 부모 중 1인이 청구 시 배우자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또는 친권불행사 증명서		
	상속인	피상속인(망자)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입양관계증 명서(상세),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상세), 제적등본, 말소자초본 등 상속증명서면 협의분할시 협의분할서(상속인 전원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첨부) 추가		
	재외국 민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표 초본(재외국민등록부등본, 거주국주소공증서면)	
		대리인	위임장, 인감증명서, 동일인 소명을 위한 주민등록표초본(재외국민등록부등본, 거 주국 주소공증서면)	
	외국인	본인	아래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와 동일(위임장은 제외)	
		대리인	위임장, 인감증명(인감증명제도가 없는 나라는 위임장 서명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 하는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공증), 동일인임을 확인하는 서면(본국 관공서의 증 명 또는 본국 공증인의 공증)과 주소증명서면(본국 관공서의 증명 또는 본국 공 증인의 공증)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 제출시: 번역문과 외국 공문서, 외국 공증인이 공증한 문서는 아포스티유 확인 제출(협약 미가입국은 재외공관 영사관 확인)			
※ 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등 관공서 발급서면은 발급일로부터 3 개월 이내의 것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별지 5]

공탁금 출급·회수청구에 관한 안내

- 법원행정처에서는 [공탁법] 제9조제4항(소멸시효 완성 전 공탁금의 수령·회수 안내)에 따라 공탁금이 장기간 지급되지 않고 있는 공탁사건에 대하여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 공탁금 출급·회수청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 담당부서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관할공탁소			
공탁사건번호	년 금 제 호	공 탁 종 류	공탁
금 액 (잔액)*	원	공 탁 일 자	년 월 일
공 탁 자			
피 공 탁 자			
관 련 사 건			
지급제한사건			

※ 공탁당사자가 다수인 경우 본 안내문에 표시된 “금액(잔액)”은 일부 권리자가 출급·회수 후 남은 금액(귀하 또는 다른 권리자들에게 지급할 금액)일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귀하를 공탁자 또는 피공탁자로 한 위 공탁사건이 현재 지급되지 않은 상태로 있습니다.
2. 민사집행법상 (가)압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등 지급제한으로 인하여 출급·회수청구권 행사의 장애사유가 있다면 그 사유를 해소한 후 공탁금 출급·회수청구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 지급제한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사건의 (가)압류 발령법원 또는 소관부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공탁금 출급·회수청구시 첨부해야 할 서류는 함께 보내드린 “공탁금 출급·회수청구절차 안내문”을 참고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서류는 개별 사건마다 다를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공탁금 출급·회수청구권은 출급·회수청구를 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완성으로 국고에 귀속될 수 있습니다([공탁법] 제9조제3항).
5. 본 안내문 발송을 위하여 [공탁법] 제9조제4항, [공탁규칙] 제60조의2제5항에 의하여 귀하의 현 주소를 조회하여 발송합니다.

※ 공탁원인사실 등 공탁사건의 자세한 내용에 관하여 의문이 있으시면 관할공탁소에 방문하여 기록을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사법등기심의관



공탁금 출급·회수청구절차 안내문

※자세한 출급절차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은 QR코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본인이 직접 청구하는 경우

변제공탁	재판상 보증공탁
1. 공탁통지서 원본(5천만 원 초과 시) 2.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1천만 원 초과 시)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4. 반대급부이행 증명서면(반대급부가 있는 경우) 5. 출급청구권 증명서면(채권자 불확지 공탁의 경우) 6. 주민등록표 초본(주소가 변동된 경우) 7. 신분증	1. 공탁서 원본(5천만 원 초과 시) 2. 담보취소결정정본 및 확정증명 3.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1천만 원 초과 시) 4.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5. 주민등록표 초본(주소가 변동된 경우) 6. 신분증
일반집행공탁	경매집행공탁
1. 증명서(채권배당계에서 수령) 2.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1천만 원 초과 시)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4. 주민등록표 초본(주소가 변동된 경우) 5. 신분증	1. 증명서(경매계에서 수령) 2.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1천만 원 초과 시)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4. 주민등록표 초본(주소가 변동된 경우) 5. 신분증
해방공탁(공탁자의 회수청구시)	기타 공통 사항
1. 공탁서 원본(5천만 원 초과 시) 2. 가압류취소결정정본 및 송달증명, 가압류취하증명, 가압류해제증명 ★ 취하(해제)접수증명, 집행해제증명은 불가 3.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1천만 원 초과 시) 4.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5. 주민등록표 초본(주소가 변동된 경우) 6. 신분증	▶ 법인 아닌 사단·재단(종중, 교회, 사찰 등) 또는 관공서는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공탁서 또는 공탁통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탁자 또는 피공탁자로부터 지급청구권을 승계받은 경우에는 승계사실 증명서면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리인에 의하여 청구하는 경우(추가서류)

- 개인의 대리인: 위임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 법인의 대리인: 법인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상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단, 부모 중 1인이 청구 시 배우자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또는 친권불행사 증명서

- ※ 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 초본, 위임장은 경매계 또는 기타집행계에도 각각 제출하여야 하므로 2부씩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 ※ 공탁금이 1천만 원 이하인 경우, ① 본인이 직접 청구하는 경우와 ② 법인 및 법인의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관할공탁소뿐만 아니라 가까운 지방법원 또는 지원 공탁소(관할공탁소와 같은 특별시 및 광역시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제외)에서도 공탁금을 찾을 수 있습니다.
- ※ 공탁금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전자공탁홈페이지(<http://ekt.scourt.go.kr>)에서 지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인감 및 인감증명은 불요하며 서명은 공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서명으로 합니다(공탁금 보관은행인 신한, KEB하나, 우리, 농협(농협중앙회만 가능), 국민, 전북, 아이엠뱅크, 부산, 광주, 경남 이외의 은행은 이체 불가).
- ※ 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 초본 등 관공서 발급서면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법령 목록

(2024. 7. 16.~2024. 7. 31.)

조약

조약제2580호	대한민국 정부와 터키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제거와 탈세 및 조세회피방지를 위한 협약	20795	2024. 07. 18	4
----------	---	-------	--------------	---

대통령령

대통령령제34700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0793	2024. 07. 16	3
대통령령제34701호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4
대통령령제34702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6
대통령령제34703호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별권) 2
대통령령제34704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	"	8
대통령령제34705호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0
대통령령제34706호	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4
대통령령제34707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5
대통령령제34708호	국악진흥법 시행령	"	"	26
대통령령제34709호	미술진흥법 시행령	"	"	33
대통령령제34710호	식물방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43
대통령령제34711호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49

대통령령제34712호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51
대통령령제34713호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52
대통령령제34714호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56
대통령령제34715호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57
대통령령제34716호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59
대통령령제34717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61
대통령령제34718호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62
대통령령제34719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64
대통령령제34720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별권) 2
대통령령제34721호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798	2024. 07. 23	4
대통령령제34722호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6
대통령령제34723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9
대통령령제34724호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1
대통령령제34725호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2
대통령령제34726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	"	26
대통령령제34727호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	"	28
대통령령제34728호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32
대통령령제34729호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44
대통령령제34730호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45

대통령령제34731호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시행령	"	"	49
대통령령제34732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54
대통령령제34733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55
대통령령제34734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57
대통령령제34735호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59
대통령령제34736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61
대통령령제34737호	수의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65
대통령령제34738호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69
대통령령제34739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 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77
대통령령제34740호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79
대통령령제34741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86
대통령령제34742호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일부개정령	"	"	95
대통령령제34743호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98
대통령령제34744호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 규정 일부개 정령	"	"	99
대통령령제34745호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 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02
대통령령제34746호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03
대통령령제34747호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05
대통령령제34748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07

대통령령제34749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10
대통령령제34750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12
대통령령제34751호	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19
대통령령제34752호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21
대통령령제34753호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24
대통령령제34754호	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28
대통령령제34755호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	132
대통령령제34756호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2
대통령령제34757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3
대통령령제34758호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0803	2024. 07. 30	5
대통령령제34759호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6
대통령령제34760호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2
대통령령제34761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5
대통령령제34762호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7
대통령령제34763호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9
대통령령제34764호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21
대통령령제34765호	승강기산업 진흥법 시행령	"	"	45
대통령령제34766호	경찰착용기록장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	"	51
대통령령제34767호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54

대통령령제34768호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56
대통령령제34769호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60
대통령령제34770호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63
대통령령제34771호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64
대통령령제34772호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65
대통령령제34773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67
대통령령제34774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69
대통령령제34775호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77
대통령령제34776호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80
대통령령제34777호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94
대통령령제34778호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95
대통령령제34779호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00
대통령령제34780호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02
대통령령제34781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04
대통령령제34782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06
대통령령제34783호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08
대통령령제34784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12
대통령령제34785호	국민 행정부담 완화 및 불편 해소를 위한 1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	"	113

총리령

총리령제1972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794	2024. 07. 17	4
총리령제1973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795	2024. 07. 18	57

부령

국토교통부령제1366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793	2024. 07. 16	7
국방부령제1156호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69
국방부령제1157호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 처리규칙 일부개정령	"	"	79
보건복지부령제1031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81
행정안전부령제495호	재해구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82
국토교통부령제1364호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794	2024. 07. 17	7
국토교통부령제1365호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0
보건복지부령제1033호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21
중소벤처기업부령제89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35
행정안전부령제494호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	"	43
환경부령제1109호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46
국토교통부령제1367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795	2024. 07. 18	58
보건복지부령제1034호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령	"	"	62

보건복지부령제1035호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및 가명 기반 의료기관의 업무 처리를 위한 국민건강 보험법 시행규칙 등 6개 법령의 일부개정령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	"	81
보건복지부령제1032호	검역공무원 복제 규칙 일부개정령	20796	2024. 07. 19	4
외교부령제136호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7
행정안전부령제496호	주소정보시설규칙 일부개정령	"	"	14
보건복지부령제1035호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및 가명 기반 의료기관의 업무 처리를 위한 국민건강 보험법 시행규칙 등 6개 법령의 일부개정령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중 정정	20797	2024. 07. 22	3
행정안전부령제497호	승강기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정령	"	"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제128호	방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798	2024. 07. 23	136
국가보훈부령제30호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39
문화체육관광부령제558호	국악진흥법 시행규칙 제정령	"	"	150
행정안전부령제499호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53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제129호	우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799	2024. 07. 24	4
국방부령제1158호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6
농림축산식품부령제672호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9
농림축산식품부령제673호	수의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0
농림축산식품부령제675호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2
문화체육관광부령제559호	스포츠클럽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42
문화체육관광부령제560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48
보건복지부령제1038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53

보건복지부령제1039호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55
해양수산부령제682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 정정	"	"	59
해양수산부령제683호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60
해양수산부령제684호	선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64
해양수산부령제686호	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68
해양수산부령제687호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69
환경부령제1110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76
환경부령제1111호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80
농림축산식품부령제674호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800	2024. 07. 25	3
보건복지부령제1036호	검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6
보건복지부령제1037호	검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7
해양수산부령제685호	수산물 자원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1
농림축산식품부령제676호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	20801	2024. 07. 26	4
행정안전부령제500호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28
고용노동부령제421호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802	2024. 07. 29	4
보건복지부령제1038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 정정	"	"	9
보건복지부령제1041호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4
산업통상자원부령제567호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5
고용노동부령제422호	숙련기술장려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803	2024. 07. 30	119

국방부령제1159호	국민 행정부담 완화 및 불편 해소를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령에 관한 국방부령	"	"	120
국방부령제1160호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23
국토교통부령제1368호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25
국토교통부령제1369호	국민 행정부담 완화 및 불편 해소를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등 3개 법령의 일부개정령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	"	128
문화체육관광부령제561호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29
법무부령제1080호	국민 행정부담 완화 및 불편 해소를 위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2개 법령의 일부개정령에 관한 법무부령	"	"	132
보건복지부령제1040호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36
산업통상자원부령제568호	국민 행정부담 완화 및 불편 해소를 위한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2개 법령의 일부개정령에 관한 산업통상자원부령	"	"	137
통일부령제132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38
행정안전부령제498호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43
행정안전부령제503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45
행정안전부령제504호	국민의 행정부담 완화 및 불편 해소를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령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	"	147
행정안전부령제505호	국민의 행정부담 완화 및 불편 해소를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령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	"	148
국토교통부령제1370호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20804	2024. 07. 31	4

교육부령제337호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	"	4
보건복지부령제1042호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	"	4
행정안전부령제506호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	"	4
국토교통부령제1371호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5
국토교통부령제1372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6
기획재정부령제1077호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	"	9
기획재정부령제1078호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27
농림축산식품부령제677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35
농림축산식품부령제678호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36
해양수산부령제689호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36
보건복지부령제1043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37
보건복지부령제1044호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42
행정안전부령제501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44
행정안전부령제502호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47
행정안전부령제507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48

인사

인사발령 법 제122호

2024. 7. 1.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사명령
1. 전 보			
가. 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박영재	대법원 근무를 명함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	노경필	"
나. 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			
	특허법원 판사	이숙연	대법원 근무를 명함

(2024. 7. 8. 자) 끝.

인사발령 법 제123호

2024. 7. 1.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사명령
1. 겸 임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장)	이국현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미래등기 추진단장에 겸임함	
(2024. 7. 15. 자) 끝.			

인사발령 법 제124호

2024. 7. 2.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사명령
1. 사법연구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지숙	2024. 7. 3.부터 2024. 7. 30.까지 사법연구를 명함. 끝.	

인사발령 법 제125호 2024. 7. 4.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사명령
1. 교육명령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	김희진	2024년도 출강법관 세미나 II (2024. 7. 15.) 피교육을 명함
나. 사법연수원 교수			
	사법연수원 교수	박찬우	2024년도 출강법관 세미나 II (2024. 7. 15.) 피교육을 명함
	"	이수현	"
	"	이승재	"
	"	장인혜	"
	"	경정원	"
	"	김소망	"
	"	김용환	"
	"	김혜성	"
	"	임택준	"
	"	한혜윤	"

끝.

인사발령 법 제126호

2024. 7. 11.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사명령
1. 교육명령			
가. 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박형준	2024. 7. 15.부터 2024. 7. 16.까지 법관연수교육(2024년도 IT와 법, 그리고 법원) 피교육을 명함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이규홍	"
나. 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의진	2024. 7. 15.부터 2024. 7. 16.까지 법관연수교육(2024년도 IT와 법, 그리고 법원) 피교육을 명함
	"	이현경	"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송각엽	"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장 찬	"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강우찬	"
	"	김수경	"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최지영	"
	인천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성보기	"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사명령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강부영	2024. 7. 15.부터 2024. 7. 16.까지 법관연수교육(2024년도 IT와 법, 그리고 법원) 피교육을 명함
	"	신지은	"
	"	이동호	"
	인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부장판사	김동건	"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재욱	"
	수원회생법원 부장판사	이영선	"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부장판사	염원섭	"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부장판사	김대현	"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부장판사	최보원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부장판사	이탁순	"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설승원	"
	"	오현석	"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임수정	"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부장판사	유아람	"
	청주지방법원 부장판사	빈태욱	"
	"	이연경	"
	"	이효두	"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사명령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부장판사	김희영	2024. 7. 15.부터 2024. 7. 16.까지 법관연수교육(2024년도 IT와 법, 그리고 법원) 피교육을 명함
	"	박현경	"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 부장판사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영덕지원 부장판사)	송병훈	"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영덕지원장	황인준	"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소민	"
	"	장병준	"
	"	정성호	"
	"	조정현	"
	부산가정법원 부장판사	신동헌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부장판사	김주관	"
	창원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최운성	"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최윤정	"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상현	"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장흥지원장	김태균	"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부장판사	서정희	"
	"	유철희	"
	"	정승연	"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사명령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부장판사	허정훈	2024. 7. 15.부터 2024. 7. 16.까지 법관연수교육(2024년도 IT와 법, 그리고 법원) 피교육을 명함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정세진	"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	방선옥	"
	"	배구민	"
	"	서인덕	"
다. 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			
	서울고등법원 판사	김민아	2024. 7. 15.부터 2024. 7. 16.까지 법관연수교육(2024년도 IT와 법, 그리고 법원) 피교육을 명함
	"	왕정옥	"
	서울고등법원 판사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영창	"
	서울고등법원 판사 (인천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신종오	"
	부산고등법원 판사 (울산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김덕교	"
	수원고등법원 판사	강선아	"
	"	김대권	"
	"	김동규	"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사명령
	수원고등법원 판사	임일혁	2024. 7. 15.부터 2024. 7. 16.까지 법관연수교육(2024년도 IT와 법, 그리고 법원) 피교육을 명함
	"	장지용	"
	특허법원 판사	이혜진	"
라. 재판연구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황성욱	2024. 7. 15.부터 2024. 7. 16.까지 법관연수교육(2024년도 IT와 법, 그리고 법원) 피교육을 명함
마. 고등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춘천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류의준	2024. 7. 15.부터 2024. 7. 16.까지 법관연수교육(2024년도 IT와 법, 그리고 법원) 피교육을 명함
	특허법원 판사	권보원	"
바. 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권경선	2024. 7. 15.부터 2024. 7. 16.까지 법관연수교육(2024년도 IT와 법, 그리고 법원) 피교육을 명함
	"	권지은	"
	"	김민지(金旻志)	"
	"	김진성	"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사명령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문 혁	2024. 7. 15.부터 2024. 7. 16.까지 법관연수교육(2024년도 IT와 법, 그리고 법원) 피교육을 명함
	"	박창우	"
	"	신정민(申貞旻)	"
	"	이종민	"
	"	임상은	"
	서울행정법원 판사	권오상	"
	"	김민아	"
	"	심용아	"
	"	허준기	"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박소민	"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정현기	"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김선범	"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이아영	"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김재현	"
	"	홍수진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	김해마루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 (법원행정처 형사지원심의관)	정재우	"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사명령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판사	임성현	2024. 7. 15.부터 2024. 7. 16.까지 법관연수교육(2024년도 IT와 법, 그리고 법원) 피교육을 명함
	인천지방법원 판사	김의담	"
	"	김형돈	"
	"	임현화	"
	인천가정법원 판사	임영실	"
	수원지방법원 판사	유현주	"
	수원회생법원 판사	원운재	"
	"	이희성	"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판사	김상희	"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판사	이호선	"
	"	전재현	"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판사	이지훈	"
	춘천지방법원 판사	박현기	"
	"	이정준	"
	대전지방법원 판사	정현우	"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논산지원 판사	강수민	"
	청주지방법원 판사	서보람	"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판사	조진용	"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사명령
	대구지방법원 판사	노형미	2024. 7. 15.부터 2024. 7. 16.까지 법관연수교육(2024년도 IT와 법, 그리고 법원) 피교육을 명함
	"	전명환	"
	부산지방법원 판사	김승현	"
	"	이은혜	"
	부산회생법원 판사	서진희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이윤규	"
	"	정성희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	윤동현	"
	창원지방법원 판사	김수현	"
	"	전민철	"
	광주지방법원 판사	김윤희	"
	전주지방법원 판사	한지숙	"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판사	이원식	"

끝.

인사발령 법 제127호

2024. 7. 17.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사명령
1. 퇴 직			
가. 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김문석	법원조직법 제45조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정년퇴직)
	"	조영철	"
나. 원로법관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창보	법원조직법 제45조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정년퇴직)
	"	성백현	"
다. 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상근	법원조직법 제45조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정년퇴직)
	대구지방법원 판사	김진석	"

(2024. 7. 31. 자) 끝.

인사발령 법 제128호

2024. 7. 18.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사명령
1. 교육명령			
가. 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이규홍	2024. 7. 22.부터 2024. 7. 23.까지 법관연수교육(2024년도 한반도 통일과 법, 그리고 법원) 피교육을 명함
나. 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고승일	2024. 7. 22.부터 2024. 7. 23.까지 법관연수교육(2024년도 한반도 통일과 법, 그리고 법원) 피교육을 명함
	"	김용두	"
	"	오세용	"
	"	최성수	"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김형률	"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정권	"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임태혁	"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안동철	"
	"	이재욱	"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사명령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부장판사	김세현	2024. 7. 22.부터 2024. 7. 23.까지 법관연수교육(2024년도 한반도 통일과 법, 그리고 법원) 피교육을 명함
	”	정의정	”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부장판사	하선화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부장판사	이탁순	”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설승원	”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 부장판사	이홍관	”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지나	”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부장판사	강세빈	”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부장판사	김희진	”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상훈	”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박세황	”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	배구민	”
다. 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			
	서울고등법원 판사 (인천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이도식	2024. 7. 22.부터 2024. 7. 23.까지 법관연수교육(2024년도 한반도 통일과 법, 그리고 법원) 피교육을 명함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사명령
	부산고등법원 판사 (창원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민달기	2024. 7. 22.부터 2024. 7. 23.까지 법관연수교육(2024년도 한반도 통일과 법, 그리고 법원) 피교육을 명함
라. 사법연수원 교수			
	사법연수원 교수	문선주	2024. 7. 22.부터 2024. 7. 23.까지 법관연수교육(2024년도 한반도 통일과 법, 그리고 법원) 피교육을 명함
마. 재판연구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이정우	2024. 7. 22.부터 2024. 7. 23.까지 법관연수교육(2024년도 한반도 통일과 법, 그리고 법원) 피교육을 명함
바. 고등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춘천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홍순진	2024. 7. 22.부터 2024. 7. 23.까지 법관연수교육(2024년도 한반도 통일과 법, 그리고 법원) 피교육을 명함
	부산고등법원 판사 (창원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김창용	2024. 7. 22.부터 2024. 7. 23.까지 법관연수교육(2024년도 한반도 통일과 법, 그리고 법원) 피교육을 명함

항	소속 및 직위	성명	인사명령
사. 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권경선	2024. 7. 22.부터 2024. 7. 23.까지 법관연수교육(2024년도 한반도 통일과 법, 그리고 법원) 피교육을 명함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안홍준	"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임성민	"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김재현	"
	인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	서민아	"
	수원회생법원 판사	정수미	"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사	강명중	"
	"	여동근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	신재호	"
	"	차윤제	"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영덕지원 판사	김선역	"
	창원지방법원 판사	원보람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사	엄현재	"
	전주지방법원 판사	남윤표	"
			끝.

인사발령 법 제129호

2024. 7. 19.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사명령
1. 임 명(연 임)			
가. 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백강진	판사에 연임함	
(2024. 7. 28. 자) 끝.			

인사발령 법 제130호

2024. 7. 19.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사명령
1. 임 명(연 임)			
가. 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오영준	판사에 연임함	
(2024. 8. 14. 자) 끝.			

인사발령 법 제131호

2024. 7. 22.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사명령
1. 전 보			
가. 고등법원 판사			
	제주지방법원 판사	강미혜	광주고등법원 판사(제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에 포함
(2024. 8. 9. 자)			
	대전지방법원 판사	유현식	대전고등법원 판사에 포함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영덕지원 판사	이강호	대구고등법원 판사에 포함
(2024. 8. 21. 자)			
나. 지방법원 판사			
	춘천지방법원 판사	이은상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판사에 포함
(2024. 8. 7. 자)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김자립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성기석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수원가정법원 판사	남관모	수원회생법원 판사에 포함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사	오지영	부산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2024. 8. 11. 자)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박미영	서울회생법원 판사에 포함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사명령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판사	한승진	수원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판사	김지건	수원회생법원 판사에 포함

(2024. 8. 21. 자)

2. 지정 및 지정기간 연장

가. 지방법원 판사

대전지방법원 판사	김지영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 법원공무원규칙 제68조의6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4. 8. 19.부터 2025. 1. 9.까지, 2025. 1. 10.부터 2025. 2. 18.까지 각 1주간의 근무시간을 20시간으로 하는 근무시간 단축근무를 명함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나경	2024. 8. 19.부터 2025. 2. 18.까지 1주간의 근무시간을 20시간으로 하는 근무시간 단축근무 기간을 연장함
대구지방법원 판사	이경한	"
전주지방법원 판사	오현순	"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사명령
3. 휴직 및 휴직기간 연장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지영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24. 8. 19.부터 2025. 2. 16.까지 휴직을 명함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부장판사	조수진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24. 8. 21.부터 2025. 8. 14.까지 휴직을 명함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문주희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24. 8. 19.부터 2025. 2. 21.까지 휴직을 명함
	"	서수정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24. 8. 19.부터 2026. 7. 19.까지 휴직을 명함
	"	이해빈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24. 8. 19.부터 2026. 2. 27.까지 휴직을 명함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이동호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24. 8. 19.부터 2024. 11. 1.까지 휴직을 명함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장재익	2024. 8. 19.부터 2025. 2. 23.까지 휴직기간을 연장함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사명령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최상수	2024. 8. 28.부터 2025. 2. 23.까지 휴직기간을 연장함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부장판사	박신영	2024. 8. 19.부터 2025. 2. 14.까지 휴직기간을 연장함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춘화	2024. 8. 21.부터 2025. 5. 2.까지 휴직기간을 연장함
나. 사법연수원 교수			
	사법연수원 교수	이성민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24. 8. 19.부터 2025. 2. 18.까지 휴직을 명함
다. 고등법원 판사			
	대전고등법원 판사	김덕완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24. 8. 9.부터 2025. 8. 8.까지 휴직을 명함
	대전고등법원 판사 (청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장지웅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24. 8. 11.부터 2024. 9. 10.까지 휴직을 명함
라. 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다연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24. 8. 7.부터 2025. 9. 19.까지 휴직을 명함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사명령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세이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24. 8. 29.부터 2025. 2. 16.까지 휴직을 명함
	”	김지예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24. 8. 8.부터 2025. 8. 17.까지 휴직을 명함
	”	박미영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24. 8. 20.부터 2024. 11. 19.까지 휴직을 명함
	”	방일수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24. 8. 21.부터 2025. 2. 14.까지 휴직을 명함
	”	홍은기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24. 8. 19.부터 2025. 8. 18.까지 휴직을 명함
	서울행정법원 판사	송연정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24. 8. 12.부터 2025. 2. 14.까지 휴직을 명함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이현지	법원조직법 제51조 및 휴직법관에 대한 보수지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2024. 8. 5.부터 2024. 11. 4.까지 휴직을 명함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사명령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민수연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24. 8. 11.부터 2025. 9. 10.까지 휴직을 명함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박지현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24. 8. 11.부터 2025. 8. 10.까지 휴직을 명함
	"	윤영수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24. 8. 21.부터 2024. 10. 31.까지 휴직을 명함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판사	권순범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24. 8. 11.부터 2025. 8. 10.까지 휴직을 명함
	인천지방법원 판사	이상언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24. 8. 1.부터 2025. 7. 25.까지 휴직을 명함
	"	황미정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24. 8. 22.부터 2025. 2. 21.까지 휴직을 명함
	수원지방법원 판사	오대훈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24. 8. 5.부터 2024. 12. 22.까지 휴직을 명함
	"	이재현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24. 8. 19.부터 2025. 8. 18.까지 휴직을 명함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사명령
	수원회생법원 판사	정혜승	법원조직법 제51조 및 휴직법관에 대한 보수지급에 관한 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4. 8. 9.부터 2025. 8. 8.까지 휴직을 명함
	대전지방법원 판사	김기호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24. 8. 19.부터 2025. 8. 31.까지 휴직을 명함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판사	목혜원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24. 8. 1.부터 2025. 1. 24.까지 휴직을 명함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	박남진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24. 8. 6.부터 2025. 7. 31.까지 휴직을 명함
	부산지방법원 판사	차민우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24. 8. 12.부터 2025. 2. 20.까지 휴직을 명함
	창원지방법원 판사	강영희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24. 8. 9.부터 2025. 8. 31.까지 휴직을 명함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판사	정지원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24. 8. 11.부터 2024. 10. 16.까지 휴직을 명함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사명령
	전주지방법원 판사	박정언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24. 8. 18.부터 2024. 11. 1.까지 휴직을 명함
	"	신서영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24. 8. 7.부터 2024. 8. 30.까지 휴직을 명함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수경	2024. 8. 24.부터 2025. 2. 14.까지 휴직기간을 연장함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오정훈	2024. 8. 17.부터 2024. 8. 31.까지 휴직기간을 연장함
	"	황지애	2024. 8. 17.부터 2024. 8. 30.까지 휴직기간을 연장함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김보현	2024. 8. 31.부터 2025. 2. 18.까지 휴직기간을 연장함
	"	이민영	2024. 8. 17.부터 2025. 2. 28.까지 휴직기간을 연장함
	수원지방법원 판사	박나라	2024. 8. 3.부터 2024. 9. 1.까지 휴직기간을 연장함
	대전지방법원 판사	신은경	2024. 8. 3.부터 2025. 2. 21.까지 휴직기간을 연장함
	부산지방법원 판사	김현정	2024. 8. 12.부터 2025. 2. 24.까지 휴직기간을 연장함

항	소속 및 직위	성명	인사명령
	부산지방법원 판사	심우승	2024. 8. 17.부터 2025. 2. 14.까지 휴직기간을 연장함
4. 복직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신명희	복직을 명함. 14호봉을 급함.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에 포함 (2024. 8. 24. 자)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황현찬	복직을 명함. 17호봉을 급함.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에 포함 (2024. 8. 21. 자)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부장판사	윤혜정	복직을 명함. 11호봉을 급함.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부장판사에 포함 (2024. 8. 9. 자)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권미연	복직을 명함. 10호봉을 급함.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에 포함 (2024. 8. 9. 자)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사명령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부장판사	김유정	복직을 명함. 10호봉을 급함.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부장판사에 보함 (2024. 8. 9. 자)
나. 고등법원 판사			
	대구고등법원 판사	이지혜	복직을 명함. 8호봉을 급함. 대구고등법원 판사에 보함 (2024. 8. 19. 자)
	부산가정법원 판사	배인영	복직을 명함. 7호봉을 급함. 부산고등법원 판사에 보함 (2024. 8. 1. 자)
다. 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정기	복직을 명함. 9호봉을 급함.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2024. 8. 17. 자)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사명령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주연	복직을 명함. 7호봉을 급함.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2024. 8. 19. 자)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 법원공무원규칙 제68조의6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4. 8. 19.부터 2025. 2. 18.까지 1주간의 근무시간을 20시간으로 하는 근무시간 단축근무를 명함
	"	박용근	복직을 명함. 11호봉을 급함.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2024. 8. 20. 자)
	"	송재윤	복직을 명함. 10호봉을 급함.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2024. 8. 17. 자)
	"	이슬아	복직을 명함. 7호봉을 급함.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2024. 8. 9. 자)
	"	최현정	복직을 명함. 7호봉을 급함.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2024. 8. 13. 자)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사명령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이승민	복직을 명함. 8호봉을 급함.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2024. 8. 17. 자)
	서울가정법원 판사	이예림	복직을 명함. 8호봉을 급함. 서울가정법원 판사에 포함 (2024. 8. 24. 자)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황지애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24. 8. 26.부터 2025. 2. 5.까지 휴직을 명함 복직을 명함. 10호봉을 급함.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2024. 8. 31. 자)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조상은	복직을 명함. 8호봉을 급함.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2024. 8. 19. 자)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김민수	복직을 명함. 7호봉을 급함.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2024. 8. 10. 자)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사명령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김민기	복직을 명함. 6호봉을 급함.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2024. 8. 20. 자)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김송현	복직을 명함. 10호봉을 급함. 의정부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2024. 8. 31. 자)
	"	김지수	복직을 명함. 4호봉을 급함. 의정부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2024. 8. 5. 자)
	"	정윤현	복직을 명함. 10호봉을 급함. 의정부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2024. 8. 31. 자)
	인천지방법원 판사	박광선	복직을 명함. 10호봉을 급함. 인천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2024. 8. 18. 자)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 법원공무원규칙 제68조의6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4. 8. 19.부터 2025. 2. 18.까지 1주간의 근무시간을 20시간으로 하는 근무시간 단축근무를 명함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사명령
	인천지방법원 판사	이혜인	복직을 명함. 5호봉을 급함. 인천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2024. 8. 13. 자)
	인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	곽여산	복직을 명함. 8호봉을 급함. 인천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2024. 8. 31. 자)
	수원지방법원 판사	박민지	복직을 명함. 7호봉을 급함. 수원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2024. 8. 1. 자)
	수원지방법원 판사	신미진	복직을 명함. 8호봉을 급함. 수원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2024. 8. 23. 자)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24. 8. 23.부터 2025. 1. 22.까지 휴직을 명함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판사	설일영	복직을 명함. 10호봉을 급함. 수원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2024. 8. 1. 자)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사명령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판사	박상한	복직을 명함. 10호봉을 급함.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판사에 포함 (2024. 8. 21. 자)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판사	배다현	복직을 명함. 9호봉을 급함.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판사에 포함 (2024. 8. 1. 자)
	대전지방법원 판사	최리지	복직을 명함. 9호봉을 급함. 대전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2024. 8. 19. 자)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 법원공무원규칙 제68조의6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4. 8. 19.부터 2025. 2. 18.까지 1주간의 근무시간을 20시간으로 하는 근무시간 단축근무를 명함
	수원가정법원 판사	조민혜	복직을 명함. 9호봉을 급함.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공주지원 판사에 포함 (2024. 8. 3. 자)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사명령
	울산지방법원 판사	김아름	복직을 명함. 6호봉을 급함. 울산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2024. 8. 1. 자)
	창원지방법원 판사	김정은	복직을 명함. 7호봉을 급함. 창원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2024. 8. 11. 자)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24. 8. 11.부터 2026. 2. 20.까지 휴직을 명함
	"	이종찬	복직을 명함. 7호봉을 급함. 창원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2024. 8. 13. 자)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24. 8. 13.부터 2025. 2. 14.까지 휴직을 명함
	광주지방법원 판사	강여진	복직을 명함. 5호봉을 급함. 광주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2024. 8. 17. 자)

항	소속 및 직위	성명	인사명령
	광주지방법원 판사	장정연	복직을 명함. 5호봉을 급함. 광주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2024. 8. 31. 자)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판사	박하영	복직을 명함. 8호봉을 급함.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판사에 포함 (2024. 8. 11. 자)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24. 8. 11.부터 2025. 2. 23.까지 휴직을 명함
	전주지방법원 판사	곽지영	복직을 명함. 7호봉을 급함. 전주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2024. 8. 3. 자)
	"	김현지	복직을 명함. 8호봉을 급함. 전주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2024. 8. 1. 자)
	"	박은혜	복직을 명함. 5호봉을 급함. 전주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2024. 8. 19. 자)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사명령
	전주지방법원 판사	신서영	복직을 명함. 6호봉을 급함. 전주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2024. 8. 31. 자)
	광주지방법원 판사	장진영	복직을 명함. 10호봉을 급함.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판사에 포함 (2024. 8. 19. 자)
5. 파 견			
가. 지방법원 판사			
	부산회생법원 판사	도민호	2024. 8. 20.부터 2025. 8. 19.까지 헤이그국제사법회의(HCCH) 상설사무국 파견근무를 명함
6. 복 귀			
가. 지방법원 판사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판사 (헤이그국제사법회의(HCCH)상설사무국)	이정아	복귀를 명함.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판사에 포함 (2024. 8. 20. 자) 끝.

인사발령 법 제132호

2024. 7. 22.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사명령
1. 사법연구 및 사법연구기간 연장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남기용	2024. 8. 19.부터 2025. 2. 18.까지 사법연구를 명함
	〃	홍은숙	〃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부장판사	허미숙	〃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권미연	2024. 8. 9.부터 2025. 2. 8.까지 사법연구를 명함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부장판사	허정훈	2024. 8. 19.부터 2025. 2. 18.까지 사법연구를 명함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하성우	2024. 8. 19.부터 2024. 12. 18.까지 사법연구 기간을 연장함
나. 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			
	광주고등법원 판사	황진희	2024. 8. 19.부터 2025. 2. 18.까지 사법연구를 명함
다. 지방법원 판사			
	광주지방법원 판사	김두희	2024. 8. 19.부터 2025. 2. 18.까지 사법연구를 명함
	전주지방법원 판사	강동극	〃 끝.

인사발령 법 제133호 2024. 7. 22.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사명령
1. 교육파견(학위과정)			
가. 고등법원 판사			
	대구고등법원 판사	김재호	2024. 8. 16.부터 2025. 8. 15.까지 미국 스탠퍼드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 교육파견 및 교육파견기간 연장 (연구과정)			
가. 고등법원 판사			
	광주고등법원 판사 (제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강동훈	2024. 8. 9.부터 2025. 8. 8.까지 미국 UC버클리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나. 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박선민	2024. 8. 19.부터 2025. 8. 18.까지 미국 페퍼다인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	유재영	2024. 8. 9.부터 2025. 8. 8.까지 미국 뉴욕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	이슬아	2024. 8. 9.부터 2025. 8. 8.까지 미국 UCLA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	이인호	2024. 8. 9.부터 2025. 8. 8.까지 독일 막스플랑크연구소 교육파견을 명함

항	소속 및 직위	성명	인사명령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황윤정	2024. 8. 19.부터 2025. 8. 18.까지 미국 포덤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서울회생법원 판사	정우성	2024. 8. 9.부터 2025. 8. 8.까지 미국 듀크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정은영	2024. 8. 19.부터 2025. 8. 18.까지 프랑스 파리제2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황경환	2024. 8. 9.부터 2025. 8. 8.까지 미국 펜실베니아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조대현	2024. 8. 19.부터 2025. 8. 18.까지 독일 프라이부르크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	조상은	2024. 8. 19.부터 2025. 8. 18.까지 스페인 마드리드국립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수원지방법원 판사	이아영	2024. 8. 19.부터 2025. 8. 18.까지 독일 프랑크푸르트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	정종인	2024. 8. 9.부터 2025. 8. 8.까지 미국 컬럼비아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판사	박정현	2024. 8. 19.부터 2025. 8. 18.까지 미국 샌디에고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사명령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판사	최승호	2024. 8. 9.부터 2025. 8. 8.까지 미국 UC어바인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대전가정법원 판사	김효진	2024. 8. 9.부터 2025. 8. 8.까지 미국 스탠퍼드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공주지원 판사	김다슬	2024. 8. 19.부터 2025. 8. 18.까지 미국 하버드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부산지방법원 판사	엄지아	2024. 8. 19.부터 2025. 8. 18.까지 미국 UC데이비스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창원지방법원 판사	유정희	2024. 8. 9.부터 2025. 8. 8.까지 독일 뮌헨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판사	이디모데	2024. 8. 19.부터 2025. 8. 18.까지 호주 멜버른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류일건	2024. 8. 11.부터 2025. 2. 10.까지 교육파견기간을 연장함

3. 교육파견(방문과정)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 부장판사	강상호	2024. 8. 9.부터 2025. 6. 8.까지 미국 페퍼다인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부장판사	이태경	2024. 8. 9.부터 2025. 6. 8.까지 미국 UC버클리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사명령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지나	2024. 8. 19.부터 2025. 6. 18.까지 네덜란드 라이덴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	윤남현	2024. 8. 19.부터 2025. 6. 18.까지 미국 샌디에고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효신	2024. 8. 9.부터 2025. 6. 8.까지 미국 UC데이비스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	인진섭	2024. 8. 19.부터 2025. 6. 18.까지 미국 샌디에고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부장판사	허 승	2024. 8. 9.부터 2025. 6. 8.까지 미국 UC어바인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정진	2024. 8. 19.부터 2025. 6. 18.까지 미국 산타클라라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	박강민	2024. 8. 19.부터 2025. 6. 18.까지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성진	2024. 8. 9.부터 2025. 6. 8.까지 미국 퍼시픽맥조지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	전범식	2024. 8. 9.부터 2025. 6. 8.까지 미국 샌디에고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사명령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탁상진	2024. 8. 19.부터 2025. 6. 18.까지 미국 샌디에고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부장판사	김유정	2024. 8. 9.부터 2025. 6. 8.까지 미국 샌디에고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나. 지방법원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신서원	2024. 8. 9.부터 2025. 6. 8.까지 미국 샌디에고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	조희성	2024. 8. 19.부터 2025. 6. 18.까지 미국 조지타운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광주지방법원 판사	윤명화	2024. 8. 19.부터 2025. 6. 18.까지 미국 조지워싱턴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끝.

인사발령 법 제134호

2024. 7. 24.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사명령
1. 사법연구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유창훈	2024. 8. 19.부터 2024. 9. 13.까지 사법연구를 명함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사명령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조영호	2024. 8. 5.부터 2024. 9. 1.까지 사법연구를 명함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허선아	2024. 8. 26.부터 2024. 9. 20.까지 사법연구를 명함
	서울회생법원 수석부장판사	임선지	2024. 8. 3.부터 2024. 8. 30.까지 사법연구를 명함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익환	2024. 8. 1.부터 2024. 8. 28.까지 사법연구를 명함
	〃	정 원	2024. 8. 31.부터 2024. 9. 18.까지 사법연구를 명함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허일승	2024. 8. 8.부터 2024. 9. 4.까지 사법연구를 명함
	수원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조병구	2024. 8. 12.부터 2024. 9. 6.까지 사법연구를 명함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순한	2024. 8. 5.부터 2024. 8. 30.까지 사법연구를 명함
나. 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			
	서울고등법원 판사	채동수	2024. 8. 1.부터 2024. 8. 28.까지 사법연구를 명함
	〃	최현중	2024. 8. 2.부터 2024. 8. 29.까지 사법연구를 명함. 끝.

인사발령 법 제135호

2024. 7. 25.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사명령
1. 정기승급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연화	16호봉을 급함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수민	14호봉을 급함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백대현	"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부장판사	박상언	"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유성혜	13호봉을 급함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제승	"
	청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안재훈	"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오현석	12호봉을 급함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박강민	"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박숙희	11호봉을 급함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부장판사	유희선	10호봉을 급함
나. 사법연수원 교수			
	사법연수원 교수	문선주	13호봉을 급함
다. 재판연구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구성진	12호봉을 급함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사명령
라. 고등법원 판사			
	부산고등법원 판사 (창원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이병호	9호봉을 급함
	광주고등법원 판사 (전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박성수	8호봉을 급함
	특허법원 판사	윤정운	"
마. 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조희성	12호봉을 급함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지충현	10호봉을 급함
	수원가정법원 판사	이현정	"
	인천가정법원 판사	황지영	9호봉을 급함
	수원지방법원 판사	김범준	"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판사	이화연	"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판사	김연준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이윤규	"
	울산지방법원 판사	최희동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동현	8호봉을 급함
	"	박승균	"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김현영	"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윤소희	"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사명령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	오에스더	8호봉을 급함
	인천지방법원 판사	위은숙	"
	"	이혜선	"
	수원가정법원 판사	김새미	"
	수원회생법원 판사	김유성	"
	대구지방법원 판사	현영주	"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 판사	강현재	"
	부산지방법원 판사	박정미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	이진아	"
	울산지방법원 판사	김언지	"
	창원지방법원 판사	강영희	"
	광주지방법원 판사	이용석	"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해남지원 판사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장흥지원 판사)	변이섭	"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김진호	7호봉을 급함
	인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	구하경	"
	청주지방법원 판사	조희정	"
	부산지방법원 판사	신은진	"
	"	황창민	"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사명령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정우택	6호봉을 급함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이현우	"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판사	박주원	"
	청주지방법원 판사	이효선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	김라미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나정	5호봉을 급함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김영완	"
	"	방민우	"
	인천지방법원 판사	유영상	"
	"	이순공	"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판사	황혜련	"
	대전지방법원 판사	서성기	"
	청주지방법원 판사	정태식	"
	울산지방법원 판사	전정우	"
	전주지방법원 판사	남윤표	"
	"	임종찬	"

(2024. 8. 1. 자) 끝.

인사발령 법 제136호 2024. 7. 25.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사명령
1. 휴 직			
가. 지방법원 판사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이승민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24. 8. 17.부터 2024. 9. 6.까지 휴직을 명함	
광주지방법원 판사	강여진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24. 8. 17.부터 2025. 8. 14.까지 휴직을 명함. 끝	

인사발령 법 제137호 2024. 7. 26.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사명령
1. 지 명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박미선	창원지방법원 창원남부시법원 판사를 지명함	
(2024. 8. 7. 자)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사명령
나. 지방법원 판사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판사	배다현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고성군법원 판사를 지명함.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양양군법원 판사를 지명함
		(2024. 8. 9. 자)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판사	장진영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장수군법원 판사를 지명함
		(2024. 8. 19. 자)	
2. 지명해제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전범식	창원지방법원 창원남부시법원 판사 지명을 해제함
		(2024. 8. 7. 자)	
나. 지방법원 판사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판사	최승호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고성군법원 판사 지명을 해제함.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양양군법원 판사 지명을 해제함
		(2024. 8. 9. 자)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사명령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판사	이디모데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장수군법원 판사 지명을 해제함

(2024. 8. 19. 자) 끝.



법원행정처

SUPREME COURT OF KOREA

2024. 08. 15. VOL. 1694



9 772951 225009

ISSN 2951-2255